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포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가 14,542명으로 전체 인구 377,577명 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
------------	-----

발의년월일: 2021년 6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마. 기초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6. 4. ~ 6. 8.)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